

기록물 보존용품에 대한 품질인증

정밀화학과 과장 강갑수

02) 509-7220 gabs@ats.go.kr

■ 기록의 보존

“총명불여둔필(聰明不如鈍筆)”이란 말이 있다. “아무리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도 막 적어 놓은 기록만 못하다”는 뜻으로 인간 기억의 유한성과 기록의 중요성을 말한 구절이라 하겠다. 기록물은 인류 문화의 전달 매개체로서 언어보다 영속적(永續的)이고 인간의 기억보다 영구적이다.

기록(記錄)은 현재의 문화를 후세에 전하기 위한 인류의 독특한 수단이며 보존됨으로써 존재한다. “한 국민의 과거시대 기념물의 보존에 바치는 노력의 정도는 그 나라 국민이 도달한 문명수준의 진정한 척도”라는 어느 역사학자의 말에 비추어 보면 기록의 보존은 우리 선조에 대한 의무이며 후세에 대한 책임일 것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금속활자의 발명 등 세계 최고의 기록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환란 중에도 기록물을 보존하려는 세계 최고의 아키비스트(Archivist) 정신이 있었다. 27대왕, 519년 간 이어진 이조의 역사가 888책의 방대한 양에 담겨 고스란히 전해진 「조선왕조실록」도 이 아키비스트 정

신의 한 산물일 것이다.

하지만 근래의 우리들은 불과 30년도 채 지나지 않은 문서들이 낱장은 넘기기가 어려울 정도로 헤어져있고 글씨는 바래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이것을 복원해야 되는데 복원기술도 마땅하지 않고 막대한 예산이 소모된다. 이것이 덮어놓고만 싶은 우리의 현실이다.

선조들에 대한 의무와 후세들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검증된 기록보존 재료 및 방법의 표준화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보존에서의 표준화란 1차적으로 기록 보존에 사용되는 물품의 표준화, 2차적으로 보존환경, 시설 등에 대한 표준화, 3차적으로 관리, 제도 등에 대한 표준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원에서는 금년 6월부터 보존용품의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여 기록보존의 표준화에 한 획을 긋게 되었다.

■ 보존용품과 인증제도

보존용품이란 기록물을 훼손 요인으로부터 보호

하며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존 관리에 사용하는 일체의 기록매체, 보관용기 및 보존관리 보존처리를 위한 각종 제품을 말하며, 보존용품인증 제도란 기록물의 보호 및 훼손 예방을 위하여 보존용품 일체에 대하여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기록물의 보존성 유지에 필요한 일정기준 이상의 품질을 보유한 보존용품에는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존용품을 인증하는 것은 첫째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목적에 맞도록 보존용품을 생산하고 사용토록 하여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적 재산을 보존 관리하며 둘째, 일반 수요자가 보존용 제품과 일반 제품을 쉽게 식별하도록 하며 셋째,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 및 일반인의 보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인증 대상

금번 실시되는 보존용품 품질인증의 인증대상은 문서용지, 필기구, 잉크에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사용량, 사용대상 등에 대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기록보존용품 및 기록물 보존공간 구성재질 등에 포함되는 품목으로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각종의 기록용 매체
용지, 필기구, 스템프 및 잉크, 프린터토너, 전산 저장용 디스크, 필름, 사진, 자기 테이프 등
2. 기록물의 보관에 이용되는 물품
바인더, 폴더, 표지, 상자, 앨범, 간지(間紙), 봉투, 라벨, 인식표 등

3. 기록물의 보존 관리에 이용되는 물품
자외선차단재료, 액자, 필름감개, 필름용기(캔류 상자), 전시대, 서가, 가구(도면함, MF함), 도로, 조명, 건축재 등
4. 보존처리 및 복원에 이용되는 물품
수선테이프, 접착제(풀), 배접지(수선지), 제본용 실, 코팅필름
5. 기타 내광성(耐光性), 내약품성, 내산화성의 특성이 필요한 제품

■ 국외 보존용품 인증 제도 현황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과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에서는 오래 전부터 보존용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ISO에서는 보존용품의 규격을 설정하고(ISO 9706 등 8종) 이에 합치되는 품질의 보존용품에 대하여는 ISO의 인증 절차에 따라 영구보존마크 ⊙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국가 규격을 정하여 이에 합격하는 종이를 사용하는 도서 등에 대하여 영구보존마크인 ⊙와 함께 그 내용을 인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AFNOR - 1994)에서도 규격에 합치하는 보존용품에 대하여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보존용 앨범 및 사진제품의 용기 등에 (AQ, Archival Quality)마크와 사진용품에는 PAT(Photographic Activity Test)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종이의 주요 노화원인 산성 성분이 제거된 제품에 대하여 AF(Acid Free) 마크를 내

광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CE마크를 부여한다. 호주에서는 보존성이 확보된 제품에 대하여 국립기록보존소에서 인증하는 Permanence Quality 마크를 사용한다.

외국의 인증제도와 운영은 국가나 공인 표준화 및 시험기관과 국립기록보존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보존용품 인증제도 시행

1996년부터 종이에 대한 인증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단체표준규격으로서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서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기록물의 보존성 향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는 잉크, 필기구 등 보존용품 전반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시행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1999년 1월 19일 제정 공포하였으며 이 법률에는 보존용품의 규격 및 품질수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기술표준원에 보존용품의 품질시험 및 인증 표시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우리 원에서는 2002년 6월 1일 자로 「보존용품인증요령」을 제정 고시하여 정밀화학파에서 보존용품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보존용품의 표준화 및 인증표시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국기표준기본법 : 제18조(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

급) 및 제20조(국기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산업표준화법 : 제11조(제품의 규격표시 인증)

및 제12조(가공기술의 규격 표시 인증)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제24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3조(편철 및 관리) 및 제39조(장기보존용 기록재료)

■ 보존용품 인증절차 및 지원제도

보존용품 인증을 위한 신청, 평가, 인증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기술표준원장에 정해진 서식과 견본제품을 가지고 신청한다.

2. 인증평가

기술표준원장이 “보존용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험, 검사 등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3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3. 인증서 교부

합격한 제품에 대하여 “보존용품인증서”를 교부한다.

4. 인증표시의 사용

“보존용품인증서”를 받으면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된 보존용품의 판매 확대 및 수요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인증제품, 인증업체, 인증사항 등을 공공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고 우선구매 등 각종지원 제도에 반영토록 요청한다.

2. 중소기업진흥진흥 및 구매촉진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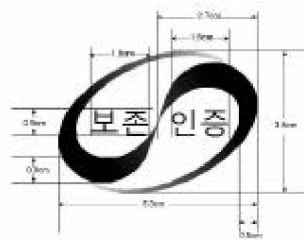
존수명과 기록물의 영구 보존성을 표현하고 있다. 색상은 흑색, 청색 등 단색(單色)으로 한다.

■ 보존용품 인증마크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존용품의 대한 규격에 심사 결과 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의 마크를 부여한다. 인증마크는 수학에서 사용하는 무한대 표시(∞)와 태극 문양을 형상화한 것으로 장기간의 보

■ 맺음말

이제 우리는 후세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록물을 남기기 위한 작은 노력으로 보존용품 인증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앞으로 인증대상 제품의 확대, 인증제도 및 제품의 홍보 등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인증기간: 200 . . ~ 200 . .

